

---

# 진도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(안)

---

# 목 차

I. 목적	1
II. 법적근거	1
III. 주민대피 관리기준	2
① 주민대피계획 수립 개요	2
②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	3
③ 단계별 주민대피 관리기준 운영 메뉴얼	5
④ 단계별 조정·해제 판단기준 및 상황전파	9
< 붙임 >	
1. 주민대피 관리기준 권고내역	10
2. 주민대피에 따른 담당자 및 유관기관별 임무	12
3. 주민대피 상황전파 체계도	16
4. 진도군 급경사지 현황	17

# - 진도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-

##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·운영

### I 목 적

-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 결과와 강수량·비탈면의 성상(性狀)을 고려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정·운영하고자 함

### II 법적근거

#### 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·비탈면의 성상(性狀) 등을 고려한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정·운영

#### < 참고법령 >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(대피명령 등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조치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(대피명령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위험지역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명령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(강제대피조치)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

### Ⅲ 주민대피 관리기준

#### ① 주민대피계획 수립 개요

##### □ 주 체 : 진도군수

-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

##### □ 대피대상

- 붕괴위험지역의 상시 계측결과 및 기상예보·특보 시 비탈면 성상의 변화 등으로 붕괴가 예측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등

##### □ 대피시기

-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군수가 주민대피 시기 등 기준 설정

##### □ 주민대피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상황관리 단계별 대피기준 및 대피절차
- 어린이 및 노약자, 여성 등 재해취약자 특별 대피대책
- 대피 시 안전요원 배치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
- GIS와 연계된 대피경로 및 단계별 대피장소
-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생활화를 위한 교육·훈련 계획
-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표지판 등 인식체계
- 주민대피 담당자별 역할 매뉴얼
- 붕괴위험지역 강제대피를 위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
-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계측기 및 시스템의 활용 계획

※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피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

## ②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

### □ 평상시 붕괴우려 징후

- 비탈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
-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외부 영향 없이 갑자기 멈출 때
- 갑자기 경사지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
-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내려앉을 때
- 주위에서 '우웅'하는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
-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던 지역에 물이 솟아나거나 포화되는 경우
- 지면·포장도로 또는 인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경우(융기발생 시)
- 콘크리트 바닥이나 기초가 기울거나 균열이 가는 경우
- 전신주, 나무, 방음벽, 울타리 등이 기울어지는 경우
- 비가 계속 내리거나 그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계곡물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
- 평상시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울타리 뒷부분에 낙석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
- 해빙기 시 암석의 틈이 벌어지거나 지반이 변형되는 경우
- 옹벽, 울타리, 낙석방지망, 낙석방지울타리 등 구조물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
- 비탈면이 변형 또는 기울거나 땅이 밀리는 경우(땅밀림)

## □ 비가 오는 중이거나 비가 그친 후 붕괴 징후

### <암반 급경사지>

- 배출수의 지속적인 발생 또는 작은 암반 탈락이 빈번한 경우
- 낙석방지망 및 방호책 뒷부분에 낙석이 쌓여 있는 경우
- 암반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경우
- 집중호우 시 비탈면 상부로부터 빗물이 집수 되어 쏟아져 내리거나, 암반의 틈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 경우

### <토사로 구성된 급경사지>

- 급경사지 주변에 시공되어 있는 배수구가 막혀 있는 경우
- 지속적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, 토사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
- 급경사지 하단부에 토사가 적체되거나 길 또는 도로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
- 강우 발생 시 급경사지 내부에 물고랑이 발생하여 심하게 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
- 강우 시 비탈면이 기울거나 움직이는 경우
- 강우 시 비탈면 상부로부터 빗물이 집수 되어 쏟아져 내리는 경우
- 비탈면 좌우 계곡부에서 다량의 우수 배출 또는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올 수 있는 경우

### <옹벽 및 석축>

- 통상 비가 오더라도 혼탁해진 적이 없는 배수구의 물이 갑자기 혼탁해지거나 배수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

- 옹벽이나 석축 배면의 토압이 증가하거나 기초지반의 변형이 발생하여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발생한 경우
- 평소 작은 균열이 커지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것은 붕괴가 발생하는 조짐
  - ※ 옹벽·석대의 일정 구간에 배부름 현상 및 상부가 전면으로 돌출된 것은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임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및 계도 실시

### ③ 단계별 주민대피 관리기준 운영 매뉴얼

#### □ 관심단계

- 대피소 지정, 유관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 현장대응 매뉴얼 작성,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전파
-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예찰활동 지속 추진
- 계측 DB 이력 관리, 계측장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정기점검 및 보수 추진
  - ※ 계측기 DB분석, 계측기기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
- 대피소, 대피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
- 주민대피 관련 보고체계 및 주요 조치내용 사전 숙지
- 붕괴징후 시 주민대피 요령 등 사전 홍보 및 교육
  - 대피소, 대피정보 전달체계 확립(마을 이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),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민의 강제적 행정조치 사전 홍보 등
- 급경사지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사전 확보
- 기상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
  -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정보 확인

## □ 주의단계

- 급경사지의 계측DB 관리 및 CCTV관찰 빈도 증가,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순찰 강화
  - 계측 DB 변위 징후 포착 시 계측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상황보고, 필요한 경우 현장 긴급 조사 실시
- 기상정보(강우량·기상특보 등) 파악 및 전파
- 이장, 지역자율방재단, 민간모니터위원 등 비상연락망 가동
- 급경사지 붕괴 인접지역 거동 불편자 사전 이동조치
- 예·경보시설 등 긴급점검 및 보수 실시
  - 자동음성·문자통보시스템 등 각종 예·경보시설의 작동상태 점검 및 시스템과 연계된 앱프의 전원 차단 여부는 확인·정비
  - ※ 예·경보시설의 긴급점검 및 보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

## □ 경계단계(경보)

- 1)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위기경보 발령
  - 담당자는 CCTV확인, 현장 긴급조사 실시, 전문기관 지원 등을 통해 계측 및 강우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
  - 상황판단회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보단계 발령 여부 결정
  -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경계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각단계 추진
- 2)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·전파
  - 급경사지 재난상황 접수 및 상황 확인
  - 재난상황 접수 시 유관기관 통보

### 3)사전대비 강화

- ◇ 현장순찰강화, 비상근무 실시, 대상지구 주민에게 대피준비 통보 및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, 지역자율방재단 등 임무 수행 사전교육 실시
  - 자동음성·문자통보시스템, 앰프, 전화, 이동차량, 방송, FAX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



안내요원, 대피담당자, 지역자율방재단, 이·통장 등은 수신여부 확인

-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, 지역자율방재단 및 대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자신의 역할 교육 실시 및 현장 파견 실시
- 붕괴위험지역 대피 대상자 수요 사전 파악
- 대피소 개방과 대피소 기본시설 설치 및 부족 물품 보완, 비상인력 대기(정전과 야간 대피를 위한 물품 등 확인)
  - 업무담당자는 물품 부족 등 필요시 즉시 지원요청
- 대피로 상태점검 및 긴급보수 등 실시
  - ※ 긴급보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내 민간사업체와 연락체계 구축
  - 대피소, 대피로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확인
- 개인별 손전등, 비상물품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
- CBS 문자방송, 지역방송 등 홍보 방송 실시
- 대피주민 수, 주민특성(재해약자 등), 위급환자 위치 사전파악 등
  - 위급환자가 자력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
- 해당 지역 주민에게 준비사항 등 긴급 안내
  - 대피지도를 긴급 배포하거나 재난 예·경보시스템 활용
  - 대피 시 이웃주민 대피여부도 확인하도록 안내
  - 이·통장이 대피장소, 대피로 및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

- 경찰, 군부대, 소방서, 지역자율방재단, 자원봉사자 등 긴급대피 관련 유관기관 역할 재점검 및 인력·장비 비상대기 협조 요청

## □ 심각단계(대피)

- 피해의 위험을 알리고 주민대피 실시(필요시 대피명령)
  - 자동문자·음성통보시스템, 자동우량경보시설, 앰프, 전화, 라디오,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
  - 안전대피로 확보, 대피로 장애물 제거, 대피경로 유도, 대피 수단 제공, 교통 통제 등 지원
  - 경고판 및 통제선(Safety Line) 설치
- 경찰, 소방서, 군부대, 보건소, 지역자율방재단,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주민대피 긴급지원 요청
  - 유관기관 등은 사전계획에 따라 주민대피, 대피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자재 등 긴급지원
- 대피물자, 인력, 장비 등 신속히 지원
  - 현지요청 또는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물자·인력·장비 신속 지원
-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 등의 수신 여부는 반드시 재확인 필요
  -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 및 대피관련 각 업무 담당자는 임무에 따른 역할 수행으로 주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함
- 대피완료 후 대피상황을 NDMS에 입력·보고
  - 대피지구명, 대피장소, 대피인원, 피해현황, 완료시각 등
  - 피해내역 파악 및 긴급지원 대책 파악
- 붕괴발생 시 원인조사 실시, 긴급조치 및 대책수립

#### 4 단계별 조정·해제 판단기준 및 상황전파

○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조정·해제 결정

- 위기경보 단계별 계측기기 오류 또는 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이후에는 조정 또는 해제

#### 〈단계별 조정·해제 기준〉

구분	조건	조정 및 해제 기준
주 의	·주의 발령 후 계측값이 주의단계 계측 기준값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	·관심단계로 조정
경 계	·경계 발령 후 계측값이 주의단계 계측 기준값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	·전문기관 현장확인 및 상황판단회의 후 주의단계로 조정 검토
심 각	·심각 발령 후 계측값이 주의단계 계측 기준값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	·전문기관 현장확인 및 상황판단회의 후 대피명령 해제 및 경계단계로 조정 검토
기 타	·피해(붕괴) 발생 후	·안전조치 및 전문기관 현장확인 후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관리단계 결정
	·계측값 오류	·전문기관 계측기기 및 관련 시스템 점검 후 관리단계 조정 검토
	·계측값이 단계별 계측 기준값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나, 급경사지에 이상징후가 없는 경우	·전문기관 급경사지 정밀 조사, 계측기기 및 관련 시스템 점검 후 관리단계 조정 검토

○ 위기경보 조정·해제에 따른 조치결과 등 상황전파

-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위기경보 단계 조정·해제 결과 전파

**붙임 1****주민대피 관리기준 권고내역**

지방자치단체에서 적합한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설정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강우특성과 계측기별 주민대피 권고기준 설정

**1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**

## ○ 급경사지 등 피해지역 강우 및 5개소 권역별 지질특성 분석

- 피해지역 강우(1999~2020년)를 분석하여 5개 권역을 지질별(화성암, 변성암, 퇴적암)로 구분하고 위기단계에 따라 기준강수량 산정(1시간, 1일, 2일)

## ○ 전국 시군구 산림면적에 따른 지질(화성암, 변성암, 퇴적암) 비율 산정

- 산림 입지환경을 지형, 모암, 경사 등 인자별로 분류하여 구축한 산림입지도의 시군구 지질 비율 확인

※ 비탈면 성상을 고려하기 위해 도심, 논밭 등의 지질 제외

## ○ 지역별 강수량 기준 산정

- 5개 권역에 대한 지질별 기준강수량과 시군구 산림 면적에 따른 지질 비율을 곱한 후 각각의 값 합산

**<급경사지 붕괴 예·경보를 위한 강수량 기준>**

행정구역		단계	기준 및 강수량 (mm)		
			1시간 최대강수량	1일 누적강수량	2일 누적강수량
전라남도	진도군	관심	15	39	53
		주의	20	55	75
		경계	30	91	131
		심각	39	131	198

## 붙임 2

## 주민대피에 따른 담당자 및 유관기관별 임무

### □ 관심, 주의, 경계단계 담당자별 임무

담당자별	주요 임무
총괄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피 준비 통보(가능한 모든 예·경보 시스템 활용)</li> <li>• 대피담당자에게 대비단계 임무 수행 지시</li> <li>• 주민대피시기 판단을 위하여 현장상황 수시파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상황 파악은 대피담당자 또는 대책본부 상황보고 시스템 활용</li> <li>- 대피담당자의 고유임무(주민대피)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상황보고 요구 자제</li> <li>- 업무총괄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본부에서 총괄업무 수행 (현장 출장 자제)</li> </ul> </li> <li>•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공문서 작성을 완료 하고 결재 대기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)</li> </ul>
안내요원 (공무원, 민간인, 지역자율방재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개 지구에 안내요원이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, 현장을 총괄하도록 함 (현장총괄담당자)</li> <li>• 담당지구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현장상황 보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대피 방해요인 유무 확인 및 위험요소 수시 점검</li> </ul> </li> <li>• 대피담당자는 담당지역 주민대피를 최우선으로 추진</li> <li>• 전화·방문 등을 통한 담당지구 주민의 현황파악</li> <li>• 앰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피 준비 전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소, 대피로, 대피준비물, 행동요령 등 사전 전파</li> <li>- 대피 준비물은 대피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상시 대피소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물품을 대피지도, 대피수첩 등에 표시하거나 미리 통보</li> </ul> </li> <li>• 해당지역 주민 대피와 관련된 특이사항 파악·보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를 위하여 인력·차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</li> <li>- 기타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악 및 지원요청 등</li> <li>- 필요시 경찰, 소방서, 병원 등에 지원 요청</li> </ul> </li> <li>•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 상황파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피로의 파손여부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</li> <li>- 대피소 기본시설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</li> </ul> </li> <li>• 재해약자 담당자·총괄 담당자와 지속적인 정보교환</li> <li>• 기타 담당지역의 대피관련 전반적인 사항 파악·보고 등</li> </ul>

담당자별	주요임무
대피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해약자의 상태 확인 및 대피 준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강상태, 대피수단의 유무, 자력대피 가능여부(가족 등), 대피준비물 확보 상태 등</li> <li>필요시 차량, 생활필수품 준비 등 대피준비 지원</li> </ul> </li> <li>대피장소, 대피소 등 사전확인</li> <li>안내요원에게 상황 전달</li> </ul>
업무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황관리의 대비단계(사전준비)부분 업무 수행</li> </ul>
대피자 (해당지역 주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피준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피준비물, 대피안내도·대피수첩 준비, 가족의 위치·상태 확인, 대피소 위치 확인, 차량 등 대피수단 확인</li> <li>외출한 가족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을 취하고, 연락 불가시 대피장소, 연락처 등을 표시한 메모지 부착</li> </ul> </li> <li>지구 밖의 안전한 장소에 있는 가족이나 친·인척 등에게 대피사실 알림</li> <li>가능하면 이웃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상호지원을 통한 안전도모</li> <li>문단속, 전기, 가스 등 점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종 대피 시에는 누전차단기를 내리고, 가스 밸브 차단</li> </ul> </li> </ul>

## □ 심각단계 담당자별 임무

담당자별	주요임무
총괄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피지시 : 예·경보시설 활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피지시는 가능한 모든 예·경보시설 활용</li> <li>1차 지시 후 안내요원, 대피담당자에게는 재차 발송 및 확인 필요</li> </ul> </li> <li>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시행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제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·경찰에 협조요청 필요</li> </ul> </li> <li>안내요원·대피담당자 등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장상황,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실시간 파악</li> </ul> </li> <li>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괄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본부에서 총괄업무 수행(현장 출장 자제)</li> </ul> </li> <li>경찰에 대피차량 유도 및 대피지구 치안유지 요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피지구 차량유도 및 치안유지는 유관기관인 경찰과 평상시 협조체계 구축 필요</li> </ul> </li> <li>상황계획서에 의거 NDMS에 입력·보고</li> </ul>

담당자별	주요임무
<p>안내요원 (공무원, 민간인, 지역자율방재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피지시 확인 즉시 담당지구 주민 대피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 대피 안내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 대피 여부 확인</li> <li>- 대피소, 안전한 대피로,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안내</li> <li>-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피 후 또는 대피 과정 중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적극 만류</li> <li>- 대피 불응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·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</li> <li>- 위급환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, 경찰, 병원 등에 협조요청</li> <li>- 주민대피 후 치안 필요시 경찰에 협조요청</li> <li>- 안내요원은 담당지구에 대한 수첩을 항상 휴대</li> </ul> </li> <li>•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철수 전에 대피담당자에게 재해약자 대피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
<p>안내요원 (공무원, 민간인, 지역자율방재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종 상황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고수단 : 전화,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</li> <li><b>&lt;대피보고 -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b></li> <li>- 보고시기 : 대피지시를 받은 직후 또는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고</li> <li><b>&lt;시작보고 -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b></li> <li>- 보고시기 : 주민에게 대피안내 방송 직후</li> <li>- 보고내용 : 대피시작 시각 및 현지 상황, 지원요청 등</li> <li><b>&lt;완료보고 -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b></li> <li>- 보고시기 : 주민 대피 완료 확인 직후</li> <li>- 보고내용 : 완료시각, 대피장소 등 개략적인 내용</li> <li><b>&lt;세부보고 - 현장총괄 담당자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b></li> <li>- 보고시기 : 지구별 대피인원 파악 후</li> <li>- 보고내용 : 대피소별 인원,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</li> </ul> </li> <li>※ 안내요원 중 현장총괄 담당자를 선정한 경우에 다른 안내요원은 현장총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.</li> </ul>
<p>대피담당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담당한 재해약자를 지정된 대피방법으로 지정된 대피장소로 최우선 대피</li> <li>• 재해약자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접 병원이나 119, 경찰 등에 지원요청(사후보고)</li> </ul> </li> <li>• 상황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고수단 : 전화,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</li> <li><b>&lt;대피보고 -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b></li> <li>- 보고시기 : 대피지시를 받은 직후 또는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보고</li> <li>- 보고내용 : 대피지시 내용 및 담당 재해약자 등</li> <li><b>&lt;완료보고 - 현지 총괄담당자에게 보고&gt;</b></li> <li>- 보고시기 : 재해약자 대피완료 직후 안내요원에게 보고</li> <li>- 보고내용 : 완료시각, 대피장소, 이름, 현 상황, 지원필요사항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재해약자 대피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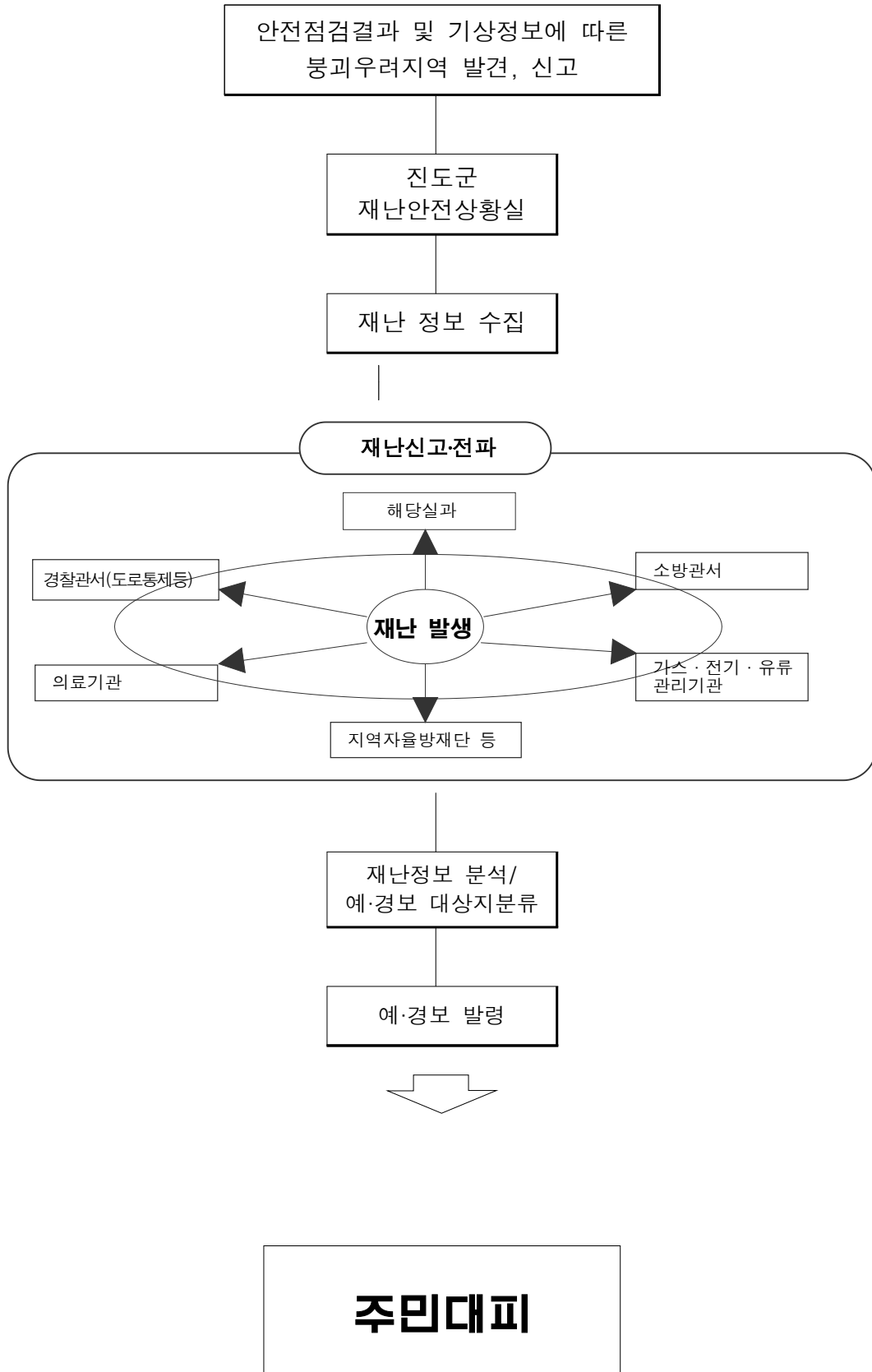
## □ 유관기관별 임무 및 역할

기관별	임 무 / 역 할
진도경찰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치안 유지</li> <li>•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사전 파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olice Line 설치, 교통통제</li> <li>- 도로 교통통제 지원 및 우회도로 지정(필요시)</li> <li>- 사상자 신원확인</li> <li>- 응급복구 장비 지원요청</li> <li>- 사상자 후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</li> </ul> </li> </ul>
진도소방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상자 발생 시 구조·구급(119 상황실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명피해 현황 확인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</li> <li>- 사상자 후송을 위한 통행로 확보</li> <li>- 사상자 응급처치, 의료기관 확보, 이송조치</li> <li>-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, 신원파악 및 가족과의 연락 등</li> </ul> </li> </ul>
지역자율방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지역에 출입통제를 위해 Safety Line 설치 및 경찰 지원</li> </ul>
진도한국병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상자 치료 및 사망자 장례절차 협조</li> </ul>
KT 진도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</li> </ul>
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</li> </ul>
민간건설시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응급복구 장비 지원</li> </ul>

※ 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대처

**붙임 3**

**주민대피 상황전파 체계도**



**붙임 4**

**진도군 급경사지 현황(2025년 현재 총26개소)**

연번	지구명	시설명	위치			등급
			면동	리	지번	
1	수유1	주택	진도읍	수유리	718-8	D
2	수유2	주택	진도읍	수유리	산 16	D
3	산월5	도로	진도읍	산월리	610-1	D
4	녹진2	도로	군내면	녹진리	산 279	C
5	녹진5	도로	군내면	녹진리	산 75-7	A
6	내산9	도로	고군면	내산리	산110-2	C
7	내산10	도로	고군면	내산리	산114	D
8	유교2	도로	고군면	오류리	산81-1	D
9	벽파1	도로	고군면	벽파리	666-1	D
10	벽파3	도로	고군면	벽파리	134-2	D
11	벽파5	도로	고군면	벽파리	산 137	D
12	내산11	도로	고군면	내산리	산 285-2	D
13	원포	도로	고군면	원포리	2-3	D
14	금갑3	주택	의신면	금갑리	674-1	E
15	만길	도로	의신면	만길리	산99	D
16	금갑1	도로	의신면	금갑리	산123-328	C
17	금갑2	도로	의신면	금갑리	656-4	C
18	금갑4	공단	의신면	금갑리	산123-151	D
19	금갑6	도로	의신면	금갑리	산123-145	D
20	금갑7	도로	의신면	금갑리	산123-115	D
21	서망	주택	임회면	남동리	638-1	D
22	용호	도로	임회면	용호리	산99-5	D
23	갈두	도로	지산면	보전리	산5-1	E
24	창유1	도로	조도면	창유리	산26	E
25	창유2	도로	조도면	창유리	산26-4	E
26	해창N1	도로	진도읍	해창리	산97-4	D